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20. 7. 22.자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본 뉴스레터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이고, 개정안의 내용 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확정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신탁 및 관세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발송하여 드린 "신탁세제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및 "2020 세법개정안 주요내용(관세 분야)"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 포함)

II.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포함)

III.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기타

I.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 포함)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취　　지] 법령에 열거된 특정시설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고 세제지원 대상자산의 범위도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함.

[개정내용]

현 행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위기지역	신규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수도권 1%)

ㅇ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2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❶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시설	7%	3%	1%
❷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❸	환경보전시설	10%	5%	3%
❹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❺	안전시설	10%	5%	1%
❻	생산성향상시설*	7% (10%)	3% (5%)	1% (2%)

* 대기업 ´20년, 중소·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 한시 상향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24 신설)

ㅇ **(적용대상) 모든 개인사업자·법인**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제외)

* 구체적 업종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하되, **일부 자산 제외**

(현행: 포지티브 ⇒ 개정: 네거티브 방식)

- ❶**토지·건물 등 구축물,** ❷**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등은 **제외**하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예외* 인정**(공제 허용)

* 【예시】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선박,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현 행	개 정 안
❼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4)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공제율 / 6% / 3% / 1% ❽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5)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공제율 / 10% / 7% / 5% ❾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 투자세액공제(§25의7) 구 분 / 모든 기업 공제율 / 최대 3% = 2% + 최대 1% (전년대비 고용증가율 ×1/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하되, 일부 예외* 인정 * 【예시】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 등 ※ 일부 자산 제외 및 일부 예외 인정의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공제율) 당기분 기본공제(Ⓐ)+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 중소 10%, 중견 3%, 대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 12%, 중견 5%, 대 3% * 12대 분야, 223개 기술의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 8의8)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 기본공제액의 200%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 ·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0 · ´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허용

2. 세액공제 및 결손금 이월세액공제기간 확대

[취　　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과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등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함.

[개정내용]

(1)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 144①)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조특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
ㅇ (대상)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	ㅇ (좌 동)
ㅇ (이월공제기간) 5년 - 창업 초기 중소기업(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경우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7년 ▪ R&D비용 세액공제: 10년 - 신성장 ·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년	ㅇ 10년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2)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 · §76의13, 소득법 §45)

현 행	개 정 안
□ **결손금 이월공제** ㅇ (공제기간) 10년 ㅇ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 · 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10년 → 15년 ㅇ (좌 동)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의 손금산입 허용(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 산출세액 × $\frac{\text{국외원천소득}}{\text{과세표준}}$ -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추 가>**	□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 이월액 손금산입** ㅇ (좌 동) - 5년 → **10년** - 공제기간 내 **미공제** 외국납부세액 **이월액**은 공제기간 종료 다음 과세연도에 **손금산입**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

3.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2①8호)

[취　　지] 친족관계등에 있는 개인을 통한 국제거래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의 정의	□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❶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❷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ㅇ (좌 동)
<신 설>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제3자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직 · 간접 소유하는 주식 포함**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❸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❹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ㅇ (좌 동)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57, 소득법 §57)

[취　　지]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중 손금산입 방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을 명확화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익금 산입**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	ㅇ간접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명확화**
ㅇ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ㅇ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한 경우**만 해당)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❶**세액공제와** ❷**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손금산입 방식 삭제)
❶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❷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삭 제>**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Ⅱ.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포함)

1.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 개편 (소득법 §4 · 17, 조특법 §91의2)

[취　　지]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도관과세(pass-through taxation)를 적용하여 금융투자소득 손익의 통산·이월공제를 허용하고, 비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법인 과세를 적용하도록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 **신고요건 추가**
❶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❷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 다만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❸ 금전으로 위탁·환급	ㅇ (좌 동)
<추 가>	❹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 구분

ㅇ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 · 환매			배 당		
양 도	국내 상장	주식형 ETF	과세 제외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기 타	배 당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세 제외
	비상장		배 당	양 도	
	국 외	등 록	배 당	양 도	
		미등록	양 도	양 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ㅇ 국내 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 배	원천: 금융투자소득	금 융 투자소득
	원천: 금융투자소득 外	배 당
환매 · 양도		금 융 투자소득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 · 환매		소득원천별 과세 (도관과세)	배 당	
양 도	장 내		대주주	양 도
			소액주주	과세제외
	장 외		양 도	

ㅇ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 배	배 당
환매 · 양도	금 융 투자소득

※ 유보이익은 법인세 과세 (조특법 §91의2 신설)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계약형	회사형
분배 · 환매	배 당	
양 도	배 당	양 도

ㅇ 국외 집합투자기구

구 분	소 득
분 배	배 당
환매 · 양도	금 융 투자소득

□ 국내상장증권 등의 거래 · 평가손익은 과세제외

<삭 제>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취　　지]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 최고세율(45%)을 신설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취　　지] 논란이 되었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하고, 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경제적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❶ - ❷ ❶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 ❷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 **(세율) 20%** ○ **(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 **(신고 · 납부) 연 1회 신고 · 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법인법 §92 · §93 · §98, 소득법 §119 · §126 · §156)

[취　　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득 간 과세형평을 제고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대상)** 비거주자 · 외국법인이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원천징수** ○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 -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양도 · 대여 · 인출시 : **가상자산 사업자** ○ **(원천징수 금액) Min[양도가액×10%, (양도가액-취득가액 등)×20%]**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 -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때 포함 ○ **(납부시기)**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 대가) 인출시 **인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 면제 적용 가능(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필요)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 104의33 신설)

[취　　지] 개인사업자와 사실상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서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 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II. 상속세및증여세 및 기타

1.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취　　지]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소득세 및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강화함. 이에 따라 향후 초과배당의 유인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ㅇ 증여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ㅇ (좌 동)
ㅇ 과세방식 : ❶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❷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적용시기>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6, §48)

[취　　지]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 간의 구분을 폐지하여 공익법인 과세체계를 통합함.

[개정내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 · 증여세 면제 한도

<table>
<tr><th>구 분</th><th>한 도</th></tr>
<tr><td>성실공익법인</td><td>10%</td></tr>
<tr><td>의결권 불행사 & 자선 · 장학 · 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td><td>20%</td></tr>
<tr><td>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td><td>5%</td></tr>
<tr><td>기타 일반 공익법인</td><td>5%</td></tr>
</table>

</td>
<td>

□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table>
<tr><th>구 분</th><th>한 도</th></tr>
<tr><td>**공익법인**</td><td>**10%***</td></tr>
<tr><td>의결권 불행사 & 자선 · 장학 · 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td><td>20%</td></tr>
<tr><td>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td><td>5%</td></tr>
</table>

* ① ~⑤ 사후관리 위반시는 **5%**

①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

② 자기내부거래 금지

③ 출연자 · 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④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 · 홍보 금지

⑤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td>
</tr>
</table>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 §20)

[취　　지]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상장법인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유한책임 원칙을 감안하여 과점주주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합리화함.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	□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ㅇ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ㅇ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 사원**)
ㅇ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ㅇ **과점주주 범위 축소**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❶ **지분율** 합계 50% **초과** ❷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예) 권리행사 가능성 있으면 적용	❶ (좌 동) ❷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 (예)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 8, 시행령 § 5)

[취　　지]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0.1% 포인트 인하함.

[개정내용]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증권거래세 세율

○ (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 (코스피) 0.25%

○ (코넥스) 0.1%

○ (비상장·장외거래) 0.45%</td><td>□ 세율 단계적 인하 (△0.1%p)

<table>
<tr><th>구 분</th><th>현 행</th><th>´21~´22년</th><th>´23년</th></tr>
<tr><td>코스피*</td><td>0.1%</td><td>0.08%</td><td>0%</td></tr>
<tr><td>코스닥</td><td>0.25%</td><td>0.23%</td><td>0.15%</td></tr>
<tr><td>코넥스</td><td>0.1%</td><td>0.1%</td><td>0.1%</td></tr>
<tr><td>기 타</td><td>0.45%</td><td>0.43%</td><td>0.35%</td></tr>
</table>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td></tr>
</table>

<적용시기>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변희찬
파트너변호사

T. 02-316-4062
E. hcbyun@shinkim.com

조춘
파트너변호사

T. 02-316-4213
E. ccho@shinkim.com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 02-316-4246
E. hjikim@shinkim.com

김창호
선임공인회계사

T. 02-316-4368
E. c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